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3.
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10명(박정환, 김기열, 정창근, 김화덕, 박왕규, 김인호, 조복희, 배지훈, 이영빈)
- 발의일자: 2021. 11. 18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12. 3.)

### 2. 제정이유

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공공기관, 공공시설 등에 ‘어르신 우선주차구역’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주차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경우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 권리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8. ~ 2021. 11. 29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조례안은 노인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고령자 친화적으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“어르신 우선주차구역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약 7%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, 2016년 13.2%, 2030년에는 24.9%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또한 2016년 249만 2,776명에서 2020년 386만 2,632명으로 47% 증가하였음에도 사회적으로 노인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운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주차장법」에 저촉되지 않고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만성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주차공간 신설 없이 현행 공공주차장 내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정책의 취지와 달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집행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.

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